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영 주 시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102
------------	-----

제출년월일 : 2001. 2.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사유

-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영주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3. 내용

-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여 공개모집 및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을 협약에 의하여 위탁함

4. 참고자료

-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계획 1부.
-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위·수탁운영 협약서 1부.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재정현황 1부.
-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위탁취지】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시설현황】

(단위 : m²)

구분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지적	용도	소유자	층	구조	면적	용도	소유자
부동산	계		43,521							
	334	전	248							
	335	전	628							
	336	전	777							
	337	답	3,002							
	338	전	1,835							
	339	답	433							
	340	답	813							
	341	전	985							
	342	전	142							
	649-1	구거	1,190							
	677	도로	280							
	산2	임야	21,268							

【위탁기간】

- 위탁기간 : 3년

【위탁내용】

-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계획

□ 목 적

45억원 예산으로 1997. 12. 15 착공하여 2000. 12. 30 준공된 청소년 수련관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시설현황

◦위치 :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34번지 일대

◦규모

· 부지 : 43,521m²(13,165평) · 건물 : 3,414m²(1,033평) - 지하1, 지상3층

◦부지현황

(단위 : m²)

지 번	면 적	용 도	소유자	비 고
계	43,521			
334외1	876	자연체험장	영주시	준도시지역
336외1	3,779	수련관	"	"
338	1,835	주차장	"	"
339외3	2,373	다목적 운동장	"	"
649-1외1	1,470	진입도로	"	"
산2외1	33,188	수련의숲, 등산로	"	

◦건물현황

(단위 : m²)

층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3,414		
지하	1,140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음악감상실2, 주방, 식당, 체육활동장, 샤워실, 화장실, 매점, 가스실.	
1층	1,052	강당, 강의실2, 상담실, 지도자실, 사무실, 휴게실, 양호실, 화장실.	
2층	655	방송실, 강의실2 미술실, 공작실, 자치활동실3, 휴게실, 화장실.	
3층	567	숙박실, 화장실.	

◦부대시설현황

품 명	설치장소	비 고
편의시설	전정, 등산로	등의자12, 파고라1
체육시설	경기장, 운동장	운동장1, 경기장1, 경기용품3조
등산로	산 2.3번지	1,280m
기타시설	수련관 부지내	오수처리시설, 냉각탑, 축열조, 암반관정, 가로등

□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
-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
-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

□ 모집방법

- 공개모집(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 신청자격(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35조제2항)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 * 결격사유(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4) - 대표자 및 운영책임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선정방법

- 위탁의 우선순위(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4항)
20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는 때에는 수련시설의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우선순위는
 - ①청소년단체
 - ②국민체육진흥공단
 - ③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순서로 함
-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방법

- 위탁의 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위탁예정자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함.

○ 위탁방식

- 운영비는 수탁자부담운영방식이며 사용료는 정수하여 운영비에 충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추진일정

- 의회 동의 : 2001년 2월 임시회 중

○ 모집공고

- 기간 : 2001. 3월 중(20일간)
- 방법 : 시청 게시판, 영주소식지, 영주시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1. 3월 중(10일간)
- 장소 : 영주시청 새마을과

○ 심사위원회 위탁운영대상자 심사·선정

- 일시 : 2001. 4월 중(기간 중 1일)
- 장소 : 시청 소회의실

- 심사위원 : 9명

구 분	계	시 칭	시의회	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비 고
		3	1	4	1	
인원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의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무과장 초중고교장 각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적십자영주지부 청소년연맹 영주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받은 자

- 위탁예정자를 경북도지사에 승인 요청(비영리법인일 경우)

- 위·수탁 운영협약서 체결(공증)

□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법인(단체)정관 및 허가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단체)임원 및 자산현황 1부(증빙서류 포함)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계획 1부.
 - 시설운영계획 · 자금조달계획 · 조직, 인력 확보계획
- 위탁운영관계 의결회의록 1부.
- 위탁운영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영주시청소년수련관 위·수탁운영 협약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위·수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영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도모하고자 수련관을 위·수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시설) 위·수탁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영주시청소년수련관
2. 위 치 :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34번지 일대
3. 재산표시 : 불임 (별표1)과 같음 (※모집계획 참조)

제3조(위·수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수탁내용) "을"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 조례에 정한 사용료 징수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료 징수) ① "을"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갑"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시에는 우선적으로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면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위·수탁시 재산의 이용에 따른 모든 수입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련관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모든 경비는 "을"의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갑"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용료

2. 냉난방 유류대
3. 시설의 신설 및 기존시설보수비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

제7조(재산관리) ①“갑”은 수련관위탁운영 기간 동안 위탁재산을 청소년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을”에게 무상사용허가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的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해서는 안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교환행위

3. 시설물의 신설, 확장 또는 멸실행위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및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④시설물 신,증축과 기계장비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기부체납하여 위·수탁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및 비품 관리) ①“갑”은 위·수탁운영기간 동안 [별표1]의 부대시설 및 비품을 “을”에게 무상관리전환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부대시설 및 비품을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제7조제2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과목등) 회계부기방식은 지방재정법 및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의 방식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계장부 등 비치관리) “을”은 수련관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현금출납대장
3. 비품대장
4. 시설이용료 징수원부
5. 입장권

제11조(운영책임자 선임) “을”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 영 제33조의2에 의거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련관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10일 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매년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련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관리 · 운영감독) ①“갑”은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수시 또는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위탁시설에 파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갑”의 시정 지시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의 준수 등) “을”은 수련관 관리 ·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
2.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 · 운영조례
3.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리 · 운영지침
5. 사업계획서

제15조(보험가입 등) ①“을”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이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은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진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변상을 위해 “을”은 협약 체결후 사업개시전까지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수련관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예방 등) “을”은 수련관관리 ·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련관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이용객이 배출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5. 수련관내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매체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위·수탁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을”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갑” 또는 “을”的 사정에 의거 상호협약해지에 관하여 합의한 때
- ② 제1항에 의한 해지를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정한 기간내에 “갑”에 속한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금 잔액은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본 수련관의 공식명칭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협약의 시행) 이 협약은 2001. . . .부터 시행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공증을 거쳐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사무소에 보
관한다.

2001. . . .

“갑”(위탁자) 영주시장 김 진 영(인)

“을”(수탁자) ○○○○ ○ ○ ○(인)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재정현황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현황】

구 분	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계	219	64	83	44	19	9
직 영	91(42)	18(28)	34(41)	20(45)	17(89)	2(22)
위 탁	128(58)	46(72)	49(59)	24(55)	2(11)	7(78)

* ()안은 백분율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分	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자 립 율	44%	53%	33%	42%	20%	49%
시 설 당 평균수입	728	381	28	128	55	136
시 설 당 평균지출	1,667	723	87	306	271	280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分	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자 립 율	73%	87%	10%	71%	44%	81%
시 설 당 평균수입	1,099	107	5	414	29	544
시 설 당 평균지출	1,497	123	54	582	65	673

관 련 법 령(발췌)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3(수련시설 운영책임자)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자격)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8 생략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3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시행령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민간위탁사

무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다. 다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⑥ 생략